

비핵화와 남북관계, 善循環 해법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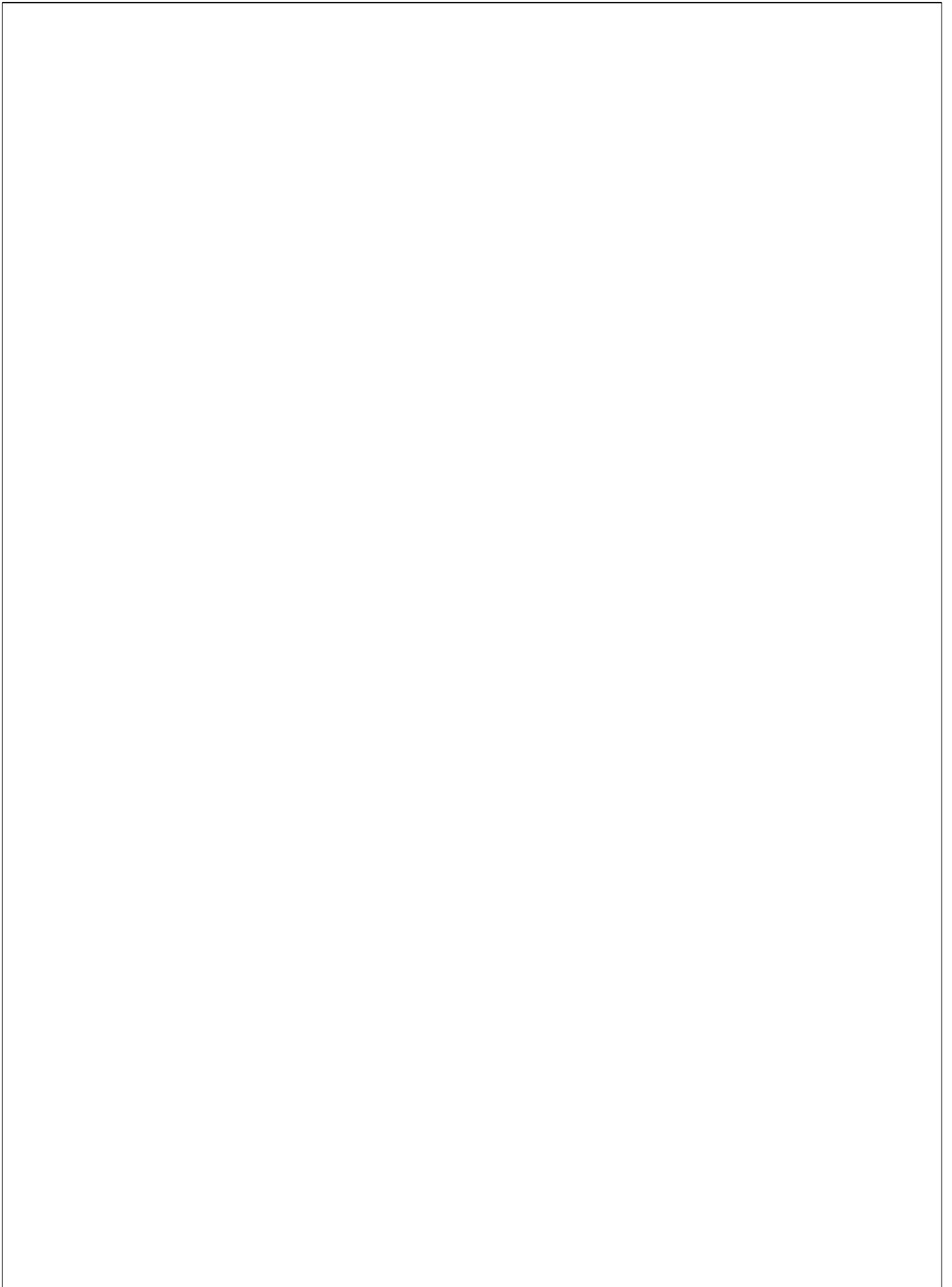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How to Build A Virtuous Circle?

비핵화와 남북관계, 善循環 해법은 없는가?

- 일시 _ 2008년 7월10일 (목) 14:00~18:00
- 장소 _ 그랜드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 주최 _ 평화문제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 진행 순서 ◎

- 13:30~14:00 등 록
-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인사말 베른하르트 켈리거(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14:10~14:50 기조발표
한스 체헛마이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이사장)
- 14:50~18:00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비핵화 3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 회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발 표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16:10~16:20 휴 식
제2주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사 회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 원장)
패 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팀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교수)
- 18:30~21:00 기념식 및 만찬



목 차

기조발표: 비핵화와 남북관계 1
한스 체헷마이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이사장)

제 1 주제 | 비핵화 3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문〉

북한 핵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1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문〉

비핵화 3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북핵원칙과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입장 23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고조치 이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망 28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제 2 주제 |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기조 I 35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기조 II 4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군사·안보분야	45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제분야	48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팀장)	
인도주의분야	51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교수)	
부록	55

기조연설

비핵화와 남북관계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스 체헷마이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현경대 이사장님, 존경하는 신영석 부이사장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우선 이렇게 제가 쟁쟁한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정책과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학술행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남북관계 및 비핵화와 관련된 긴장완화정책의 합치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순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비핵화는 단지 긴장완화정책을 쓸모 없게 만드는 위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상충한 두 가지 목표들 간에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어제 마침 한국의 통일전문가들과 만나 통일과 관련된 현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무시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는 상황이 변화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들 중 하나였습니다. 비핵화 또는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한 간의 접근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6자회담과 연계시킴으로써 비핵화와 개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일 경

우 대규모 협력사업과 경제지원 등의 형식을 통해 1인당 소득을 3,000 달러로 2~3배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각각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에 있었던 대선과 총선을 위한 선거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성을 지니고 있는 공약(公約)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협력제안을 했음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새 정부의 시도는 거친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과 함께 벽에 부딪혔습니다. 초기의 침묵 이후 터져 나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한국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 명박 정부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이며, 해수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설치하는 등과 같은 계획 중인 대규모 사업들의 착수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자신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가져다 줄 홍보효과가 뛰어난 방안들을 관철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독의 콜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이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사민-자민당 연정의 동방정책 이후에 동독의 냉랭한 입장을 확인한 후, 결국 동독이 서독을 경제협력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명의 전임자가 구사했던 광범위한 무비관적 접근정책 이후에 실시되는 대북정책의 두 번째 국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기아사태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사례와의 공통점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제 2기 동방정책'은 현재 한국의 MB-독트린과 비슷한 양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동방정책을 구사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켰으며, 나토 회원국들, 그 중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민당 출신의 빌리 브란트 총리(1969-1974)와 헬무트 슈미트 총리(1974-1982) 집권 시에 소련 및 폴란드 그리고 동독과의 관계를 규정한 일련의 협약들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협약들을 통해 동서독간에 교류가 늘어났지만, 그로 인한 대기는 비뺐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지원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후 질서를 인정하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관련된 추후이행인 측면도 있었지만(예: 폴란드 서쪽국경의 변경), 그 중 몇몇 사안들은 불필요한 동시에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독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많은 서독국민들만을 화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을 희망하던 많은 동독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헬무트 슈미트 정부는 나토의 새로운 중거리 무기 도입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으며, 80년대의 평화움직임은 소련에 대한 미숙한 태도와 미국에 대한 커다란 불신으로 특징지워 졌습니다.

1982년 헬무트 콜 정부가 출범하면서 콜 총리는 외교부문과 대 동독 정책부문에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나토와의 긴밀한 협조(새로운 무기도입 찬성), 서유럽 통합의 지속 및 가속화 그리고 새로운 독일정책의 이행이 그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상황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던 1984년 연설에서 콜 총리는 동독에 대한 균형 잡힌 관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전제로서 동독 측의 협약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 그리고 동독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긴장완화정책의 목표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약간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목표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한국에서 북한정권의 용어선택에 신경을 써서 개방 또는 개혁과 같은 단어들을 한국 통일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헬무트 콜 정부 이전에 동독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국가현황보고서를 재 도입할 때까지 이 보고서 발간은 폐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즉각적인 냉전의 수사들과 더불어 새로운 동서독간 긴장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당시 야당으로 전환한 사회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동독은 결국에는 서독의 새로운 태도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당시 기사당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 동독 최대지원사업이었던, 서독정부의

보증 하에 서독의 은행들이 동독에 수십억 마르크에 이르는 차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따르는 명확한 대가가 존재하였습니다. 차관에 대해 서독정부가 보증을 하는 대신에 서독국민들의 동독여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동독이 일방적으로 세운 내독간 국경선에 설치해 놓았던 크레모어 제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화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요구, 관철시켰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안들 중 하나가 제 2기 동방정책 국면에서의 인권정책의 수위조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콜 정부는 동독의 정권붕괴 혹은 혼란이나 소련의 군사개입 - 1953년 동독 사람들의 봉기에 대한 무력진압으로부터, 1956년 헝가리 사태, 1968년 프라하의 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79년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까지 - 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동독의 불안정한 정국에 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에 그 이전 서독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동독 내 인권문제에는 적극 개입하여, 예를 들면 동독 내 정치범들에 대한 명확한 상황개선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새로운 인권정책의 한 축으로서 해당주체에 관한 열린 토론 및 내독간 대화에 있어서 동독 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독 내 인권침해사례를 가능한 한 사법적 견지에서 수집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센터는 내독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민당 정치인들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냉전의 산물이며, 긴장완화를 방해하는 기관인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센터의 폐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지만, 통일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센터의 존재가 동독 내 반정권 세력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던 동시에, 많은 동독 국가기관들의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완화시켰습니다. 새로운 동방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번째 요소는 물질적 보상을 통해 정치범을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 자체의 상황을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과거 동독시절에 대표적인 반정권 인사였던 동시에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이너 에펠만 구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이사장께서 우리 재단과 평화문제연구소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펠만 이사장께서 한국에서 생생하고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을

것이며, 한국의 통일부도 통일연구원의 틀 안에서 상술한 것과 유사한 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1987년 당시 동독 국가수반이며,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가 마침내 서독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그는 다른 외국 국가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매우 원하고 필요했던 바와 같이 인정을 받은 듯 보였으나, 동시에 당시 서독 정부는 통일은 변함없이 서독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불과 2년 후에 동독주민들은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동독에서 대규모집회가 열리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동독은 해체되고 통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방정책이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이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통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사업들과 긴장완화정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명확한 기준 및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소는 매력적인 제안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현재 북한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우리 재단 한국 사무소에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이 이러한 제안을 확고하게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엄격하게 통제된 언론에 발표하는 동안에 현재 공식적인 월수입이 몇 달러에 불과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제시된 숫자에 대해 곱씹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의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한편 북한에서의 개혁압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관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일정한 기본신뢰가 확보되고 난 이후인 현재는 좀 더 결정적인 정책을 구사할 시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한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전제로서 남북한 간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서의 신뢰와 군사분야 및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부단한 경계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 이산가족상봉과 전쟁포로문제, 납북인사문제 및 또다시 기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문제와 같은 인도적 분야에서는 관용적인 모습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독일과 한국이 지닌 유사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긴장완화정책은 서로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두 개의 개

념이 아닌 최적의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행사의 의미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스 자이텔 재단과 평화문제연구소 간의 협력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갑니다. 저희 두 기관이 협력사업을 시작한 지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베를린과 독일을 가로지르고 있는 장벽은 향후 100년은 더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장벽은 무너졌으며,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물론 독일통일에 따른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일통일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인접국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빠른 물적 복구와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안타깝게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및 권력핵심부의 주민들에 대한 등한시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기아문제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사례는 독일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또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동란과 전체주의적이며, 인권을 경시하는 김씨 왕조의 이데올로기는 독일 공산주의가 남긴 것보다 더욱 큰 상처를 남긴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의 사례는 수 십 년 간의 분단으로 인해 두 개의 이질적인 사회가 합쳐지는 작업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의 독일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일의 날을 맞이하면 민족의 숙원과제인 자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한국민들께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뜻 깊은 학술회의에서 이루어 지는 현실적인 상황분석이 이러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비핵화 3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글은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북한 핵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 인 택
(고려대학교 교수)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신고에 따른 검증에 충실히 협력하면 45일 내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 1천 950만 달러 (약 200억)의 예산을 배정했음을 밝혔다.

북한은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플루토늄의 양을 37kg 정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어왔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리아에의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증 가능하게 신고했느냐가 의문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약 신고 후 45일 동안의 검증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임을 밝혀 북핵의 신고와 검증의 문제가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과연 45일 간의 검증기간 동안 북한의 신고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고에는 핵관련 시설의 목록이 제공되었지만 핵무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거의 핵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간접 시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에 농축우라늄 관련 기술 및 설비를 제공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재차 시인함으로써 논란은 한층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핵 문제의 진전과 논란의 가능성 속에 이를 논의할 6자회담이 조만간 북경에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최근 북·미간의 긴밀한 실무 접촉,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회의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의 성과 등을 비춰볼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진전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 3단계의 합의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다.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북·미회담의 추동력을 이어오고 있고 최근 일본과도 대화를 재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북한의 대화 당사자가 현 이명박 정부이고, 그리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변화라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과 출범이래 일관되게 대북정책의 기초를 밝혀오고 있다. 비핵·개방·3000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비핵화 정책이다.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며 그러나 비핵화 자체는 목적으로서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는 공존정책이다. 지난 박정희대통령 시절 7.4남북공동성명 이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남북공존정책이어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남북공존을 그 정신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만 목적의 지향성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수단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들과의 차이점은 있다. 셋째, 공영발전 정책이다. 비핵·개방·3000에서 특히 3000정책은 북한을 단지 회유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남북이 공영발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 하겠다. 즉, 북한의 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정도로 올림으로써 남북이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나온 정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공존, 공영발전, 그리고 평화창출이라

는 기저를 바탕으로 한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전향적인 대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경, 보수 일색의 대북정책으로 호도되고 있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호도하는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do-nothing policy’를 본질로 삼는 강경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핵화의 단계적 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고려하는 매우 유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한 의도만 있다면 한국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북한이 받아서 나쁘지 않는 매우 건설적인 대북정책이다. 따라서 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포괄적이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이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3단계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있다. 1단계는 2·13합의의 완전이행 단계로서 기존의 6자회담의 정신과 합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이의 순조로운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단계는 2·13합의에 따라서 불능화와 신고 및 검증이 잘 진행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비핵·개방·3000 정책에서 일부분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핵의 완전한 해결 이전이라도 북한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생활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3단계는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3000정책의 주요 플랜들이 모두 실천되는 단계이다. 별첨에 있는 3000플랜의 주요 정책들이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비핵·개방·3000’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비핵화의 강조이다. 대북정책의 기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있다. 즉 비핵화를 목적의 가장 중요한 순위에 놓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란 대북정책의 목표에 철저히 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다는 것이다. 즉, 대화와 협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비핵화의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도주의적 지원을 훨씬 벗어나는 지원은 경제협력의 테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연계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의 추진을 위해 불능화와 신고 및 검증이 끝나는 2단계에서 국내적으로는 범정부 적 추진 기구를, 남북간에는 실무회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3000 플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기존의 2·13 합의와 지난 10·3합의를 존중하고, 만약 북한 이 이러한 합의를 완벽히 지킨다면 남북은 지금의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대화와 협력 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고, 3단계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이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3000플랜을 완성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비핵화의 진전과정과 남북 협력의 진전과정을 상응시키는 매우 단계적이며 발전적 어프로치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번의 신고와 검증문제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의 큰 흐름은 현 시점에서의 북한핵의 동결과 완전한 비핵화 의 두 개의 목표 중에 북한이 어떠한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는가이다. 지난 10·3합 의는 현 시점에서의 동결이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목표가 아니라 중간목표라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1단계로서의 불능화는 기존의 핵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그 치되, 그러나 신고와 검증은 3단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기초가 되겠음 해야 된다는 것 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신고와 향후 검증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지만 만약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앞으 로 북핵문제의 전도는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남북 차원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지금처럼 마치 ‘통미봉남’을 하는 것과 같은 어프 로치를 구사하는 것은 큰 틀에서 6자회담의 미래에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케 만든다. 북한이 아무리 핵 문제가 북·미 문제임을 강변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동시에 남북문제임을 부인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대해서 초기의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현재 극도의 비방을 일삼는 것은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나 향후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발전을 위해서 남북의 협력은 필수적이 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북의 공존과 공영발전을 위한 것이지 남북의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로서도 이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비핵·개방·

3000정책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더욱이 남북 간의 공식적인 루트에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여 있고, 미국이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북 양쪽에서 대화의 필요성의 동인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하였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얻어냈다고는 하나 이것으로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호간에 대화의 채널을 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93년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은 항상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해 왔고 지금의 시계추는 이 양 극단에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의를 오해함이 없이 적극 남북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 첨]

비핵·개방·3000 정책

(1) 구상의 개요

- ◆ <비핵·개방·3000 정책>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 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임.
- ◆ 즉 북한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이 가동되면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 향후 10년 내에 1인당 소득 3000수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임.
- ◆ 6자회담국들 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인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 구상>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임.
- ◆ 본 구상은 북한이 핵 폐기와 체제개방을 완료해야만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수동적이고 경직된 정책이 아니며, 전향적인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판단과 결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처방임.
- ◆ 또한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비핵·개방·3000구상>의 이행준비에 착수하고, 나아가 핵 폐기 조치를 진행할 경우 본 구상의 일부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른 유연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 1인당 소득 3000불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 ◆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 핵문제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실시해야 한다

는 입장이며, 그 일환으로 북한의 수해방지와 산림녹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식량·의료 등에 관한 <인도적 지원 협력사무소>설치는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임.

(2) 5대 중점 프로젝트

1. 경제: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年 300만불 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2.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육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3.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4. 인프라: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Km 新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5. 생활향상: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3) 단계적 추진방안

1단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	-----------------------

-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협의회 구성(비핵·개방·3000구상 실현 협의)
- 남북경제협력협정 체결 (남북경협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즉각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동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것임. 이때 남북한 사이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함. 그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협정(Korean Economic Community Cooperation Arrangement, KECCA)’을 체결함.

2단계	북한의 핵 폐기 이행
-----	--------------------

- 5대 분야 중 교육·생활향상의 일부 프로젝트 가동 착수
(북핵 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연계)

※ 나아가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지원 분야 중에서 교육, 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할 수 있음. 아울러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펴므로써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도모함.

3단계	북한의 핵 폐기 완료
-----	-------------

-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본격 가동
- 400억 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

※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동시점과 그 조건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대북경협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임. 이러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한 간 정치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토론문〉

비핵화 3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6월 26일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신고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2007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신고기한을 반년이나 넘김으로써 ‘일정 지연과 정체’라는 북핵문제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당초 2·13 합의가 체결되었을 때만 해도, 신고의 범위와 내용이 지금처럼 빈약할 것이라는 관측은 없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만큼, ‘신고’는 그러한 폐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미의 당국자들이 주장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신고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북핵폐기라는 목표 달성이 요원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소위 ‘싱가포르 합의’라고 명명된 신고 관련 합의의 골자는 플루토늄, HEU, 시리아 핵확산 세 가지 문제를 둘로 구분해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고와 철저한 검증, HEU와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된 배경에는 플루토늄을 현존하는 실질적인 군사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HEU와 핵확산은 과거의 문제로서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부시 행정부 2기의 변화된 정책적 판단과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리아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은 2007년 9월 6일 감행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에 핵확산은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며, HEU도 북한이 수입한 고강도 알루미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용 HEU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에,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간의 활동 상황을 공식 신고서에 담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정부에 제출한 신고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이며 ①핵

관련 시설 목록, ②플루토늄 생산 및 추출량과 그 사용처, ③우라늄 재고량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과 추출에 관련된 지난 20여 년 간의 활동기록을 미국 정부에 넘긴 바 있다.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2008년 5월 초 북한을 방문, 모두 312권, 18,882쪽에 달하는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가동기록을 넘겨받았고, 미국 전문가들이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문건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제출한 공식 신고서의 보충자료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고 과정은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미국 내에서 북·미간 타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 임기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대북협상 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파들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정책이 이란 등 다른 핵개발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북핵 신고에 대한 미국 내 기반의 취약함은 향후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검증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북한의 핵보유라는 엄중한 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잘못된 유산이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적, 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핵신고는 기존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고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검증, 핵무기 폐기), 양보했던(신고의 범위와 내용 등)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 신고와 폐기의 관건은 검증이다. 북한의 핵신고로 비핵화 2단계(불능화·신고 단계)가 끝났으며 이제 3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은 검증의 어려움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군비통제의 역사는 검증이야말로 군비통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까지 군비통제협상의 발목을 잡고 모 든 것으로 수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증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핵폐기 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북핵폐기 검증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해서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핵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전체제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평화체제와 북핵의 연계는 북핵 폐기라는 6자회담의 초점을 흐리고 이 회담을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정전체제의 법적 정당성과 현실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바탕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계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의 대결과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독재체제 사이의 체제경쟁이며, 이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훌륭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식은 사라질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2006년 10월 9일은 적어도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의 국가적 치욕일이다. 한국 전쟁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과 155마일 휴전선에서 아직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게 핵보유를 허용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한반도에서 앞으로 한민족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역사적인 과오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6·25전쟁 이후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임과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물려주어선 안 되었을 잘못된 유산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북한 정권에게 달려 있다. 현재의 김정일 정권이 핵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는 한 한국은 상당기간 북한 핵과 공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임기가 종료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 진 현재의 북핵구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인기 없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부시 행정부 하에서 구축된 기존의 구도를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핵문제 전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미 행정부와 공조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적 과제일 것이다.*

〈토론문〉

중국의 북핵원칙과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입장

이 희 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 중국의 북핵정책의 변화?

▲ 중국의 북핵정책이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한다면 독립변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 1) **국제환경:** 9·11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었고 중국도 2001년 WTO가입 이후 자본주의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된 이상, 유엔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 스스로도 책임대국론(responsible great power)을 강조하고 있다.
- 2) **중국국내정치:** 중국은 여전히 취약한 내부통제력과 세계적 군사력의 한계(global military reach)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정체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안정을 위해 대외여건을 개선하고 공고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북핵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3) **중국의 (동북)아시아 중시전략:** 중국은 중단기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동북)아시아에 뿌리를 두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적극적인 동아시아 FTA 정책으로 나타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매력공세(Charming offensive)를 강조하면서 역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것은 한중관계를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Hedging)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북핵문제, 북한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이익의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인다.

□ 중국의 북핵원칙

- 1) 한반도 비핵화
-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 3)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 결국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핵원칙에서 제1차 북핵위기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북핵문제를 북·미간 문제로 이해하고 철저히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했던(3자회담의 예) 것과는 달리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해결원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오히려 ‘다자 틀 내에서 양자대화’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후진타오 시기 북핵전략이 소극적 불간섭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양자주의적 접근에서 다자주의로의 전환, 책임대국론과 삼화(三和)노선의 견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후 Passing China를 방지하고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북핵문제의 핵심적 이슈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수를 제한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할 것이다.

□ 북한체제보장과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태도

▲ 중국은 6자회담 구성국들이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비핵화(핵 무기 포함)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통한 <9·19 공동성명>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도 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방안이 현실에서는 쉽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돌발행동,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정성,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초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핵 제거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제재에 참여한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비핵화가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북핵물질과 기술이 중국내 분리주의자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우려해야하고 핵사고에 의한 오염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의 핵도미노와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유일한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핵보유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다.
-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위협을 제거한 북핵보유를 현실적으로 묵인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3단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보다는 핵물질 이전 방지에 초점을 두면서 부시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거나, 북핵보유를 반대하면서도 핵무기 해체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제적으로 북한의 과거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북한의 체제보장과 핵문제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고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경우 과도화를 전제하고 말하면 중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 비핵화 2단계에 대한 중국의 평가

▲ 비록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발전궤도와 추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① 북한의 핵신고 결정 ② 미국의 승낙과 이행조치 ③ 핵불능화와 핵신고 이행으로 95만톤의 중유제공과 미국의 50만톤에 달하는 식량지원의 결실 ④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 북·일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및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2단계 행동 중에서 관건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고 전개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핵신고서에 나타난 모든 핵계획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되었는가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핵불능화 문제에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6자회담 주체들이 비확산과 경제와 에너지지원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도 과제로 보고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해결의 기본원칙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실현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 ▲ 북핵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과정이 될 것이다. 모든 조치는 북·미 대화와 관계개선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국가들의 상호협력,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일방적 행동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 ▲ 핵폐기의 로드맵에서 어떤 내용, 어떤 방법을 포함하며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리고 북미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이미 시동이 걸린 북일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기초에서 동북아 안보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 ▲ 핵심적으로는 검증방식과 검증정도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일단 핵 신고를 했다는 것은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핵시설,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무기를 처리하는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 군사보장, 경제적 지원이 전제되는 최종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외한 다른 협상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3단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리아와의 핵커백션, 납치문제 등이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 대체적으로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3단계 협상이 진전을 거둘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미국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이다. 그 해법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해결하는 순차적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선과제는 ‘플루토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핵검증 방식에 있어 100%의 신뢰를 주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 베이징에서의 3자회담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단계에서는 북핵폐기, 대북 제재해제와 관계정상화,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경수로문제 등 대북지원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다자틀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나 주도권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중국이 목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assing Korea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토론문〉

신고조치 이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망

전 봉 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한 이래 미국에 대하여 일관되게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 바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이다. 전자가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요구로서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후자는 구체적이며 단기간 내 실현가능한 조치이다. 따라서 북한이 후자에 더욱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부시 대통령이 미 현지시간으로 6월 26일 오전 7시 40분에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방침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발표 직후 곧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테러지원국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할 것을 지시하여,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가 개시되었다. 미 의회는 이에 호응하여 27일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확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번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 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글렌 수정법은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에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대북 중유 지원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핵신고의 검증을 거쳐 45일 이후에 발효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선이 있다. 대북 투자와 경협 자유화를 기대하는 전망이 있고, 이와 반대로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은 26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지정 해제가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인권유린, 2006년의 핵실험, 무기확산 등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안보리의 제재 역시 유효하다.”

해들리 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에 따른 효과는 북한 상품 수입과 금융 거래 관련 등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을 채택하여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미정부는 핵실험 국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제재에 대하여 안보리 결의까지 수용하여, 사실상 북한에 대하여 금수조치를 부과하였다. 클린턴 정부시절 대거 해제되었던 경제제재 조치가 모두 복원되었으며, 일부 인도적 지원 이외에는 어떤 경제교류도 금지하였다.

그런데 일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현실화된다면, 실질적인 제재 해제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한 대가로 상징적인 해제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미국은 예외적으로 과거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법도 있으나,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집중적인 대화가 새로이 요구된다.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이 신고의 검증문제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3단계 비핵화 협상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제3단계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폐지하는 조치도 앞당기는 대타협이 요구된다.

2.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좁은 기회

북한 냉각탑 폭파와 이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핵문제가 순탄하게 풀려나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미국을 불신하는 만큼 미국도 북한을 불신하며, 여전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미국 내 반발을 감안한 듯,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앞서 45일 동안 우리는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 수준을 계속 평가하고,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검증'의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북·미간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기대하듯이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가 계속 열려 있다는 보장은 없다. 미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된다면, 부시 대통령의 외교행위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노력이 좌절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북정책을 정립하는데 최소한 반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정체 또는 마비될 것이다. 설사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대화, 유화정책을 추진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북미관계가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대가로 본격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채 몇 달도 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북미대화에 수동적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부시 행정부 말기의 적극적인 대화정책은 오히려 예외에 해당된다. 북한은 8년 만에 돌아온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안타깝게도 그 기회의 창은 몇 달 후 닫히고 말 것이며, 다음 기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누구도 모른다.

흔히 북한이 '시간벌기' 협상전술에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 속에서 1년이 아쉬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조속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기다리며 6자회담과 북·미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북한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북한이 2000년 임기 말의 클린턴 행정부와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차기 미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안보 전문가의 발언이 있어 소개한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원장과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 두 사람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정책세미나에서 각각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고로, 갈루치 원장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이클 그린 교수는 현재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캠프의 외교참모로 활동하고 있다. 우선 갈루치 원장은 북·미 협상에 대해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 되면 더 나은 북·미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북한이 오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북핵 신고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미 공화당과 민주당에 모두 남아 있으며, 어느 당이 차기 미국 정권을 잡아도 지금의 부시 행정부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리아 핵 확산 문제, 우라늄 농축 문제, 원심분리기의 도입선 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인권 탄압과 전제정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완전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번 핵 합의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못하고, 시리아 핵 기술 이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점에 특히 비판적이다. 그린 교수는 매케인 후보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해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패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팀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교수)

*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글은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기초 I

이 동 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I. 우선 알아야 할 것 - 2008 政權交替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2007 大選(2007.12.19)의 결과

○ 1위<한나라당> 李明博(11,492,389표/48.17%) 대 2위 <통합민주당> 鄭東泳(6,174,681표/26.1%) 간 票差(5,317,708표)

· 15대 대선(1997): 金大中(40.27%) 대 李會昌(38.7%)

· 16대 대선(2002): 盧武鉉(48.9%) 대 李會昌(46.6%)

★ 右派(李明博+李會昌 = 63.8%/1500만표) 대 左派(鄭東泳+文國現+權永吉+李仁濟 = 35.6%/840만표)

〈意味〉

▶ 17대 大選은 無爭點 선거 ⇒ 유일한 爭點은 BBK (BBK는 MB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슈) ⇒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위 票差는 530만 표 (10회의 직선 대 통령선거 가운데 最大) ⇒ MB의 선택 아니라 “鄭東泳은 不可” = “左派退出”

2.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2008.4.9) 결과

○ 18대 국회의 左右 세력 分布

- ▶ 당선자 기준: 右派 205(한나라: 153 + 자유선진: 18 + 친박연대:14 + 무소속: 20)
대 左派 94(통합민주: 81 + 민주노동: 5 + 창조한국: 3 + 무소속: 5)
- ▶ 득표율 기준 (비례대표): 右派 57.5%(한나라: 37.48% + 자유선진: 6.84% + 친박연대: 13.18%) 대 左派 34.65%(통합민주: 25.17% + 민주노동: 5.68% + 창조한국: 3.80%)
 - 17대 국회(2004): 좌(우리+민노+민주) 58.4% vs 우(한나라+자민련) 38%

〈意味〉

- ▶ ‘친북·좌파’ 세력의 집단 추방
 - 통합민주당 ‘左派’ 巨物들의 대거 落馬: 김근태, 김부겸, 김원웅, 민병두, 배기선, 손학규, 신기남, 유인태, 장영달, 정동영, 한명숙
 - ‘運動圈 386’의 追放: 오영식, 이상호, 우원식, 유기홍, 윤호중, 이기우, 이목희, 이인영, 임종석, 정봉주, 정청래, 최성, 최재천, (전해철, 김만수) 등
 - 17대 국회의 ‘386’ 의원 31명 중 18대 총선에 출마한 23명 가운데 당선자는 강기정, 서갑원, 조정식, 최재성, 안민석, 강성종, 송영길, 이광재 등에 불과

3. 17대 大選/18대 總選 결과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 ‘경제’보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등 ‘國家正体性’ 관련 국정분야를 正常化하라는 국민의 요구 ⇒ ‘잃어버린 10년’ 回復 의지

II.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였는가?: ‘非正常’의 實態

1.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

- 제1항(“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왜곡·훼손 + 南의 일방적 ‘聯共化’·‘容共化’ + ‘韓美同盟’ 토대 파괴 초래
 - ▶ 남북간 人的 往來는 북한 + 남한의 친북·좌파 세력 간의 ‘民族共助’ ⇒ “북쪽의 注文대로 남쪽을 길들이는” ‘上層 統一戰線’ 舞臺 제공

- 제2항(“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 통일정책의 失蹤: ‘평화’를 이유로 60년간의 체제경쟁 승자인 대한민국 주도 통일 포기 [‘승리한 체제’인 남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실패한 체제’인 북의 공산 독재 체제 간의 비현실적인 ‘비빔밥’식 통일 追究]
 - ▶ 대한민국 헌법(통일 ‘이전’·‘이후’ “공산당 불법화”) 위반으로 原因無效

2. ‘햇볕정책’의 虛實: “주어서 變化시킨다”의 虛構

- 標榜: ‘相互主義’ 포기 [“相互主義를 주장하면 북이 받지 않고 받지 않으면 북의 變化는 없다”] ⇒ 인적·물적 교류 확대 [① “민족적 화해” 촉진 + ② “북의 ‘개방·개혁’ 유도” + ③ “북의 대남 의존도 제고” + ④ “평화의 담보금” + ⑤ “통일 비용 경감” + ⑥ “북핵 해결 촉진” + ⑦ 인도주의 추구]
- 實際: ‘민족공조’라는 虛構的 구호 아래 대한민국에게 이미 망해버려서 回生이 불가능한 북한의 金正日 정권을 延命시켜 주는 ‘젓소 牧場’ 기능 강요

3. 當面 懸案

- ‘10.4 선언’(盧武鉉·金正日 회담)과 ‘11.16 합의’ (남북총리회담) 합의 사항이행
 - ▶ ‘6.15 선언’ 관련 합의 사항(① 기념일 지정, ② 공동 기념행사, ③ ‘법률·제도’ 정비 등)의 처리
 - ▶ ‘합의’(?)된 경험 프로젝트 처리 [① 합의 내용 不明·② 所要經費 不明: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112억 달러(?)]
- 既 추진 중인 대북 ‘經協’의 將來
 - ▶ ① 금강산 ② 개성공단 ③ 이산가족 상봉 ④ 핵문제 관련 지원(重油 + 輕水爐 건설 경비 등) ⑤ 인도지원 ⑥ 각종 민간 지원
- ‘비핵·개방·3000’ 構想의 추진(?)
 - ▶ 최근의 북핵 문제 진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북에 의한 북핵 신고·영변 흑연로 냉각탑 폭파 vs 미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금 및 교역금지

대상국 해제 움직임] → “북핵 해결의 진전”인가?

- ▶ ‘개혁·개방’에 대한 金正日의 거부 반응 → 북의 ‘개혁·개방’도 ‘비핵·개방·3000’의 ‘조건’인가, 아닌가?

Ⅲ.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방향

1. ‘6.15 선언’의 처리

- ‘헌법 합치’ 여부 판단: ‘憲法學者會議’에서 검토 ⇒ ‘違憲’임으로 ‘原因無效’ ⇒ ‘廢棄’ 선언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復歸하여 이에 입각한 남북대화 추진

2. 헌법에 합치되는 ‘통일정책’ 闡明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 + ‘성공한 체제’와 ‘실패한 체제’의 ‘비빔밥’식 통일(연방제)의 배제 + 북한의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천명
- ‘통일’ 정책과 ‘대화’ 정책의 차별화 추진

3. 彈力的 對北政策으로의 轉換

- ‘햇볕정책’(“주어서 變化시킨다”)을 廢棄하고 彈力的인 ‘相互主義’(“變化하는만큼 도와준다”)로 轉換 - 효과 검증 체제의 강구
- 북한의 體制變化를 적극 추진 [① 인권 상황 개선, ② 개혁·개방 수용]
- 남북간 신뢰에 기초한 군비감축 적극 추진 [북핵 포기 + 化生 무기포기 + 재래식 군비 감축]

4. 대북정책 추진체제 人的 構成을 바꿔야 한다

- 외교통상부(柳明桓)·통일부(金夏中)·법무부(김경한) 장관 및 國情院長(김성호) 등 대북정책 관련 부처의 장이 ‘金大中·盧武鉉 정권’ 참가자들 ⇒ 정부안팎의 대

북정책 頭腦集團(국책연구소 등)의 人的 물갈이 없어

5. 當面 懸案에 대한 對策

가. '10.4 선언'·'11.15 합의' 처리

- '6.15 선언' 관련 사항은 폐기 ⇒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復歸
- 대북 경협 프로젝트는 李明博 '당선인'의 '대북 경협 4원칙'의 '4개 원칙'(① 북핵 해결,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 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과 '3단계 처리방안'(① 당장 추진, ② 향후 추진, ③ 추진 취소)에 의거하여 처리

나. 既 추진 중의 對北經協 대책: '투명성' 제고 통한 '국민적 합의' 기반구축

- 다음 사항에 대한 監査院 감사 및 '白書' 작성·공개
 - ▶ 지난 10년간(1998-2007)의 '남북경협기금' 造成 實績·執行 實態 및 成果
 - ▶ 지난 10년간(1998-2007)의 대북경제협력사업(정부·민간망라) 추진 內譯 및 成果
- 對北經協 추진 내용에 대한 實時間 모니터 체제(Watch-dog) 강구

다. 인도적 지원 제공 원칙 마련

- 북한의 정확한 실제 식량부족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투명성' 확보를 포함하여 지원 식량의 流用방지 대책 강구
- 근원적 대책(集團農의 個人農 전환 등에 의한 식량증산대책 등) 강구

라. '비핵·개방·3000' 構想의 원칙 堅持

- 북핵 문제에 관한 韓·美·日 共助體制 견지
- 북의 '개혁·개방'에 관한 입장 堅持

5. 結論: 문제는 '氣 싸움' - 북을 남의 '명석' 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

- 남쪽에서의 李明博 정부의 등장으로 새 판이 짜여 지게 되는 2008년의 남북관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기본적으로 2008년의 남북관계는 金正日의 북한과 남쪽에서

10년간의 ‘좌파 천하’를 끝장내고 권력을 탈환한 ‘보수·우파’ 정부 사이에 ‘명석’을 차지하기 위한 ‘氣 싸움’의 무대가 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서두를 것이냐이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2008년에 전개될 이 ‘氣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서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 그동안 金大中·盧武鉉 정권의 ‘햇볕논자’들은 “대북 경제지원이 북의 대남의존도를 높여 줄 것”이라는 이론으로 대북 ‘퍼주기’를 옹호해 왔다. 만약 그 같은 논리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대북 ‘퍼주기’가 8년여에 걸쳐 진행 된 지금의 시점이면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離乳(이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대남 의존도’는 제고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남측의 조건을 강화하더라도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李明博 정부가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이 ‘氣싸움’에서 북한을 꺾음으로써 ‘주는 쪽’인 대한민국이 까는 ‘명석’ 위에서 주는 경험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대북 경험의 목적인 ‘북한의 변화’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북한이 그들의 ‘명석’을 고집하여 경험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겁내서도 안 된다. 북한이 그같은 경직된 자세를 고수할 때 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禁斷症狀(금단증상)’을 겪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의 ‘명석’ 위로 올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곧 대북정책이다.*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기조 II

정 세 현
(전 통일부 장관)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당국차원의 남북접촉을 끊었다. 식량지원 제의도 거절했다. 앞으로 '통미봉남'이 심화될 것 같다. 대통령 참모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전환기적 조정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북한의 자세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급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자세 변화나 기다리면서 남북관계를 방기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2.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甲乙關係는 아니다.

대북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북한이 강력 거부하면 추진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추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이 적극 거부하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정책이라야 주변 국가들의 협조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북정책은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만 한다. 여기에 덧붙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남북의 정치적 有不利가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모순의 양 날개처럼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면서도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라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쌍무관계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복잡한 함수관계다. 덧셈 뺄셈 같은 관계가 아니라, 多次聯立方程式 같은 관계다.

인수위 시절 새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으로 공시된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3월 중순까지 침묵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세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이후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일부 장관 발언이 나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해야한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은 대남 공격 모드로 돌변했다. 3월 하순 개성공단에서 남쪽 당국자들을 퇴거시킨 후, 4월부터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흑독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비핵-개방-3000>구상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쪽이 남쪽의 요구(비핵화와 개방)를 충족시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갑을 관계적 발상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비핵 조건이나 개방 조건도 문제지만, 3000달러 대목이 가장 불쾌하다는 것이다. 이후 북측의 대남 言辭가 거칠어지고 조치도 강경해졌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런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따금 새어 나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 언급의 片鱗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이런 판단인 것 같다.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지난 정부처럼 안하겠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는가? 아직 배가 부르다는 애긴가? 그러나 아쉬운 쪽은 북한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결국 태도를 바꿔 나올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연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도 늦지 않다.”

남북관계가 외딴 섬에 살고 있으면서 혈통이 다른 위아래 마을 사이의 관계라면, 형편이 어려운 쪽이 이런 제의를 아무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면에서는 북쪽이 남쪽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문제와 대외관계 면에서 명분을 놓고 아직도 치열한 기 싸움과 물밑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다. 북은 이런 점에서 지금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정착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언젠가는 한반도 상황 주도의 기회를 잡아 보겠다는 꿈을 아직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오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려 하겠는가?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 1/n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논의가 시작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주역의 위치를 확보하여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견되는 북핵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일정 기준으로 逆算할 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대북제안을 찾는데 기술적으로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과 철학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갑을 관계적 시각대신 여야 관계적 시각에서, 경합과 협력의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우위를 확보해나가는 중장기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 대북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3. 대승적 자세로 6.15와 10.4선언 존중 의사를 밝혀야 한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통로로 표명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로 비판해 온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의 요구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권의 정체성 때문에도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어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속도를 내고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일본도 결국 이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려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도 부쩍 대북관계를 챙기는 추세다. 북한을 둘러싸고 求愛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핵문제를 일으킨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현주소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선순환 시키겠다고 했지만,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북·미관계는 순항하는가 하면, 북한은 남쪽 최고책임자가 6.15와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때까지 남북관계는 닫아놓겠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요구의 배경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활용하는 <약자의 공갈>이라고 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미·중·러·일의 경쟁적 대북접근에 고무되어 부리는 대남압박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남 요구의 배경이나 경위야 어찌되었건, 남북관계를 막힌 상태로 놔두거나 남북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남북 중 누가 손해인가? 이대로 간다면 안보상황이

나빠져 이명박 정부가 최고공약으로 내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기 때문에 못 들어 주겠다고 버티다가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안정이 되어야 북·미관계와 한·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우리의 대외여건이 여러 면에서 좋아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리 역할과 입지가 커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요구이지만, 정부가 대승적 자세로 6.15공동선언 존중과 10.4선언 이후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6.15와 10.4선언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치문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서명한 문서가 대남차원에서는 2개뿐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구형 컴퓨터 한 대 낡은 걸상 한 개도 聖物視되는 정치문화 속에서, 현재의 북한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제쳐두고 옛 문서를 따르자고 하면 대남분야 일꾼들이 한 치라도 움직일 수 있겠는가? 易地思之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참모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4. 맺는말

최근 정부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혹시 남북관계의 특성과 국제정세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북정책 기초를 재정립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의사를 표시하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려면 빠를수록 좋다. 제한질, 늦어도 광복절은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6.15와 10.4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식량지원을 제의한다면 북한도 받을 것이다. 이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상봉 등 전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패널〉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군사·안보분야

백 승 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 단계 남북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과학적 인식이란 함은 ‘정파적 인식, 정파적 평가’가 배제된 가운데 분단상황이 유지되어 온 과정 속에서 ‘지난 100일의 남북관계’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정부 간 대화중단, 경제협력 지속’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분단 역사상 2007년 4/4분기에 정부 간 대화는 최고조로 활발했다. 그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는 87%이상 증가되어 12,000명 수준에서 29,000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금강산 관광객도 7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간교류만 해도 1월-5월 사이에 총 76,460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47% 증가되었고, 남북교역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되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지난 140여일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에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1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현황을 갖고 현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거나, 성과를 과도하게 자신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화소강, 교류협력 지속’을 ‘남북관계 파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 시에도 2회에 걸쳐(북한미사일 발사, 핵실험) 16개월 동안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5회에 걸쳐 34개월 동안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꾸준하게 진화,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셋째,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북측의 경직된 태도를 남북관계 평가의 준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정부시기도 북측은 햇볕정책을 비판했고, 참여정부에도 ‘대북송금 수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적이 있다. 우리 새 정부 출범시 남북관계가 경

색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2008년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시기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특징은 ‘습관성, 일반성’이 있다. 그 원인도 우리 측에 있기보다 북측 입장에 있다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한 남북관계조정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 관리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학자들도 공식석상에서 북측지도자 이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거명한다. 그런데 북측 매체가 우리 대통령에게 하는 태도는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어느 측에 있는가를 잘 말해 준다.

넷째, ‘통미봉남’에 대한 피해의식이 담긴 예민한 입장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이지 ‘누가 주도하여 해결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지난 140여 일 동안 북핵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우리정부의 ‘주도적 모습’ 보다는 ‘핵문제해결 진전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핵’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북측이 ‘핵불능화 이행’을 통해 미국에 접근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가 말해주듯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냥 남북관계는 관성을 유지한 채 조정되고, 발전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적어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는 크게 다음 몇 가지를 보완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비전으로 제시된 대북정책 원칙들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우리의 기본입장을 바꾸면 북측은 물론 국제사회,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붕괴된다. 둘째,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간 대화중단은 남북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유지한 가운데 대화재개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 6자회담 재개, 북경올림픽 활용,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제1차 이명박-부시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2007년 10.3합의』에서도 2단계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6자 외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핵해결 진전 시 개최하기로 한 한반도평화포럼이 여건이 성숙되어 개최된다면 ‘남북간 신뢰구축’논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10.4남북정상합의』내용 중 재정

부담이 적은 군사분야 합의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간 대화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역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임무와 권한을 통해 남북관계발전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가장 예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군사-안보분야」다. 그래서 정부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군사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역발상을 통해 군사 분야의 약속이행을 조율함으로써 기존에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려는 포지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도 있다.

2002년은 남북관계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매우 곤혹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한 해이다. 월드컵 준결승을 앞두고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측은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다. 그 해 6월 모든 학자들은 햇볕정책이 서해에 빠졌다고 했다. 그런데 동해에는 금강산 관광선이 다니고 있었다. 몇 개월 뒤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측은 대규모 미너 응원단을 보냈다. 우리사회의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햇볕정책의 승리, 결실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경쟁적으로 분석했다. 몇 주일 뒤 북측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표에게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시인했다.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남북관계는 퐁퐁얼어 붙었다. 이것이 2차 핵위기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한 해 동안에도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7월 현재의 남북관계’를 너무 나쁘게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극단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 특징’의 반복 정도로 가볍게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기반을 형성해가는데 필요한 우선과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가느냐에 있다. 핵문제해결이 우선 과제이고, 핵문제 해결국면을 잘 활용하여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되, 지속적으로 ‘분단을 종식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와 대화를 해야 한다.*

〈패널〉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경제분야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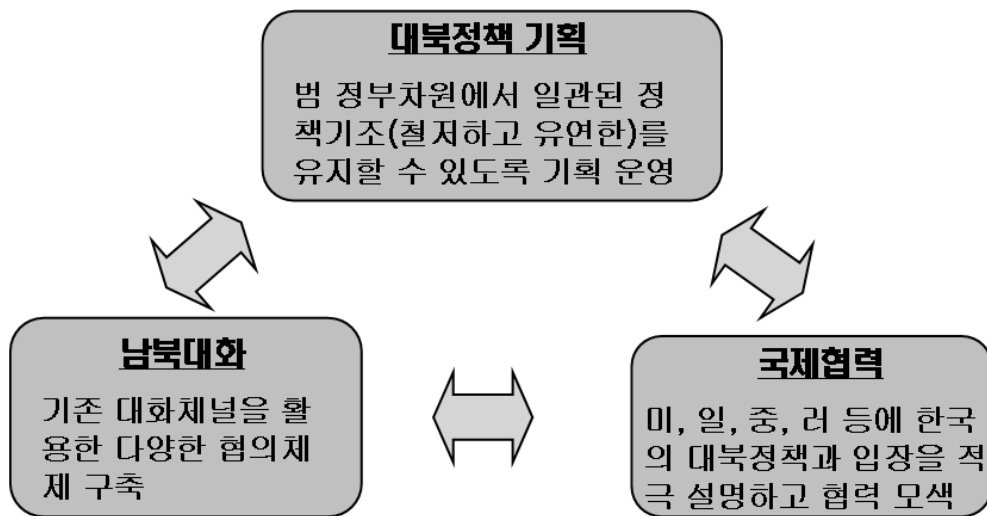
“3박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을 돈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정부의 기획력이다. 북한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민감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유연하지만 철저하고도 일관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획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한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과 동시에 각국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자금 400억 달러 조성”과 같은 접근은 다소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이 일정 정도의 종자돈을 내놓고 남북한이 협력하여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세일즈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해 내기 위해 남북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남북대화 채널은 다양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총리회담, 부총리급의 남북경협공동위원회, 차관급의 특정 회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회담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시기에 합의된 내용들도 이 회담과정에서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정리할 것과 추진할 것 등을 구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정책을 추진,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경협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북경협정책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이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경제의 국제사회 진입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남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지원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적어도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인도적 입장에서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협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대북경협은 북한의 현실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북의 변화 및 발전 속도를 외부와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변화요구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은 주로 남한이 북한에 주는 일 방향적인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10년 후를 예상해보자. 한반도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일종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면

서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북아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상호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FTA가 될 수 있다.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는 한·중, 한·일 FTA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에서도 촉발될 수 있다. 동북아 역내교역비중은 EU의 역내교역비중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향후 동북아 지역은 가장 결속력을 가진 경제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인해 쉽게 블록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문제는 바로 동북아 역내 블록화의 추진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추동될 경우 북한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협력의 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국제사회는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대북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들은 역시 한국, 중국,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패널〉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인도주의 분야

김 병 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1. 인도주의 분야(대북지원, 인권) 쟁점의 배경

○ 이명박 정부의 입장

- 지난 10년의 '퍼주기' 관행과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을 시정
- 남북경협 4원칙: 비핵화의 진전, 사업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국민적 지지
- 인도주의 지원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무조건 지원 (북한의 요청 조건?)
- 개성공단, 6·15선언, 10·4합의 '전략적 모호성' 견지

○ 북한당국의 완강한 입장

-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당의 결정(신년공동사설)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
- '비핵·개방·3천' 정책 전면 거부, 개성공단·금강산의 3통문제 제기
- 남측 적십자사의 옥수수 5만톤 지원 제의 거절
- 남측정부의 6·15선언과 10·4합의 이행선언 요구

○ 북미관계의 급진전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 6.25 58주년에 즈음한 북미양국의 조치, 핵신고서 제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냉각탑 해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중대한 변화
- 식량 50만톤 지원

○ 북한의 기아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혼란

- 통일부: 긴급상황 아님

- 세계식량기구(WFP)의 60만톤 긴급지원 및 대북지원단체의 대규모 아사사태 경고, 종교계, 사회원로들의 대북지원 호소문

2. 인도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 정책·대책에 관한 이해

- 북한의 기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시장화의 진행으로 도시빈민, 취약계층의 기아문제 심각, 7백만 빈민층
- 남북대립과 기싸움으로 얻는 득실 계산
 - 자존심 제고, 카타르시스 효과 vs. 한반도의 긴장고조, 경제적 불안
 -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인하는 효과 의문
- 대북지원의 실효성 문제: 빈민층에 지원식량이 전달되는가
 - 균량미로 전용된다는 주장, 분배의 투명성 문제
- 교류협력 적극화 정책만이 해결방법
 - 경제협력과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통해 주민의식 및 체제를 변화
 -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상황에 맞는 한방요법

(2)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 인권문제: 분리·병행 전략
 - 인적접촉(human contact),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정치적 인권 (political human rights)의 세 범주로 구분, 순차적 혹은 연계적 방법으로 추진
 - 인적접촉의 영역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가족상봉을 필요로 하는 문제
 - 인도주의 영역은 식량문제, 개발, 복지 등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
 - 정치적 인권영역은 전통적 인권영역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자유권
- 대북지원: 사회개발을 위한 지원·원조
 -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건없이 제공하되, 북한사회개발과 통일준비라는 종합적 계획 하에 추진. 북한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 제시.

- 사회개발모델 - 남북나눔운동의 황북 봉산군 천덕리 지역개발. 복지모델도 가능
- 통일준비 - 이산가족 등 사회적 차별집단에 재정지원, 체제변화 촉진

(3) 세부과제

- △5년 계획 및 인도주의·인권 종합계획 2020 수립, △‘남북 인도주의 대화’ 추진, △정부-민간 및 정부간 역할분담, △국제사회와의 연대, △자료·정책 개발, △여론형성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

3. 해결의 열쇠: 창의적 리더십

- 2012년까지 앞으로 5년은 한국의 도움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대북 마케팅을 시작,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도모
- 정신: 인도주의 - 정치성 배제, 인권문제의 진정성 확보
- 방법: 실용주의 - 문제제기 보다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 공개적인 정치·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대화·설득 활용, 북한인의 사고와 가치를 활용, 상대방의 체면 보호
- 수단·자원: 소프트파워(soft power) - 선제의로 도덕적 힘 확보, 북한의 협상 유인*

부 록

9·19 공동성명 (국·영문)	57
2·13 합의문 (국·영문)	61
10·3 합의문 (국·영문)	66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서	70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국·영문)	84
6·15남북공동선언	86
10·4 정상선언	87

(북한,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6자회담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국, 영문) (2005. 9. 19)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부상, 겐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 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The 9.19 Joint Statement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South Korea)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to the DPRK.

-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 4)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

(국, 영문) (2007. 2. 13)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 III.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 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Final)

- I .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 II .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 III .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Agreed Minute on Burden Sharing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국, 영문)(2007.10.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II.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 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I .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II.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III.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IV.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

-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 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 제 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증상 중지

- 제 8 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증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보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 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 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 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 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 5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 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 6 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 9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 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 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 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 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 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은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 12. 31)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 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 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 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 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 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